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가합563506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A

변론 종결 2015. 4. 16.

판결 선고 2015. 5.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5.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145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2009. 3. 24. 보증금액 135,000,000원, 보증기한 2009. 3. 24.부터 2010. 3. 23.까지1)로 하여, 2009. 5. 15. 보증금액 160,000,000원, 보증기한 2009. 5. 15.부터 2010. 5. 14.까지2)로 하여 원고가 C의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B은 위 약정에 의한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4. 6. 27. 부도처리되었고,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8.22. C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285,008,717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C으로부터 1,386,970원을 회수하여 1,016,037원은 채권보전비용에, 370,933원은 위 대출원리금에 충당하여 남은 대출원리금은 284,637,784원이다. 한편 위 대출에 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21원, 대지급금은 180,287원이다.

다.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4. 5.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날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14570호로 채권최고액 5천만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4. 5. 30. 체결되었고, 원고의 B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후구상권은 2014. 8. 22. 발생하여 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2009. 3. 24.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 후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C이 부도처리되어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4. 8. 22. 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여 사후구상권을 취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사후구상권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부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 1.기준 가액이 34,612,8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고, 이 사건 계약 당시 B은 원고에 대해서만 284,812,192원(=284,637,784원 + 121원 +180,287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다.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 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그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의 자금 사정에 대해 알지 못한 채 B에게 정상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라면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B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06년경 벽지 및 장판 사업을 하는 한화 엘앤씨 주식회사의 상재사업부 D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한화 엘앤씨의 대리점이었던 C을 운영하는 B을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점, 그 후 피고가 회사를 그만두고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B이 E로부터 바닥재 등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면서 B과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점, 피고는 B에게 2014. 3. 26. 30,000,000원, 2014. 4. 17. 35,000,000원, 2014. 5. 19. 60,000,000원 합계 125,000,000원을 대여하고 2014. 5. 27. 70,140,000원을 변제받고 남은 54,860,000원의 담보로 B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각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나 이자 등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고 차용증과 같은 근거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는 2014. 5. 1. B에게 송금한 55,000,000원에 대하여 기왕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면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는 B에게 65,000,000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상계하거나 정산처리 없이 별도로 금원을 송금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채권최고액도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잔액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악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4. 5. 30.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145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희, 판사 최다은, 판사 김준혁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인천 강화군 F 답 1442.2㎡. 끝.

- 1) 후에 보증기한이 2015. 3. 20.까지로 연장됨.
- 2) 후에 보증기한이 2014. 9. 12.까지로 연장됨.